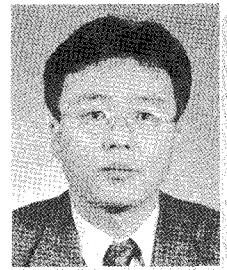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 요령(위생 SOP)에 대하여



김 용 상

농림부 가축위생과

글을 시작하며 . . .

농림부는 병원성대장균 O157 등 식중독균이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축산물이 오염되어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 당국, 관련업계, 소비자 등이 이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세부 행동지침인 "축산물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위생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그간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이를 최종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하여 위생 SOP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의사들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최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성미생물이 나 농약 등의 위해물질이 없는 안전축산물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97년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대장균 O157:H7 오염 사건, 98년 호주산 쇠고기 앤도설판(농약) 오염

사건, '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알 수 있듯이, 축산식품은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위험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며, 오염된 축산식품을 소비자(특히, 노약자, 어린이등)이 섭취하였을 경우 식중독사고 등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축산식품으로 인한 위생사고는 사후 수습에 막대한 희생이 소요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물위생위험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등의 위생당국, 관련업계, 소비자,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 등이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할 체계적인 대처요령인 위생 SOP를 수립하게 되었다.

본 위생 SOP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긴급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정하고, 각 상황별 세부 위생조치 실행절차와

유관 기관·단체 등의 세부임무를 규정하였다. 긴급 조치상황을 크게 상황분석, 위생조치, 조직 협조 체계, 그리고 교육·홍보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수입증단조치, 강제회수조치, 검역·검사 강화조치 등 총 33개 항목이므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상황별 조치내용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간 위생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부처간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위생문제 발생 시 부처간 업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교부, 복지부,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별 업무내용을 미리 설정하였다.

둘째- 본 위생 SOP는 축산식품 위생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황발생 → 상황파악 → 기본조치 → 상황 최종판단 → 세부 긴급위생조치 결정 공표 → 긴급 위생조치 해제여부 판단"의 사건진행단계별로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 위생 SOP는 축산식품의 공중위생상 주로 문제가 되는 병원성미생물 27종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증상, 독성, 관련 축산물, 예방방법등으로 구분하여 개괄하였고, 위해잔류물질의 경우도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분하여 잔류허용기준, 특성, 주요 오염원 등을 개괄하였고, 실제 위생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위생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식을 각 사안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이럼으로서 본 위생 SOP는 문제발생시 말 그대로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행동교본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다. 축산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최초로 이를 이루어 낸 것이다.

본 내용은 특성상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개조식으로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글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농림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시행하게 되는 위생 SOP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긴급위생조치계획 개요

내용

- ◆ WTO 출범 및 산업화 진전으로 대량생산·대량유통이 일반화됨에 따라 위해물질(잔류물질 및 미생물등)에 오염된 축산물이 국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유통되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 주요 축산물 안전사고 : '95년 호주산 쇠고기 CFZ(농약)오염사건, '97년 미국산쇠고기 병원성대장균 O157:H7 오염사건, '98년 호주산 쇠고기 앤도설판(농약) 오염사건, '99년 벨기에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사건 등

I. 추진목표

- ▶ 위해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수립
- ▶ 축산물 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배포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능력 배양

2. 범위

- ▶ 위해 축산물의 반송·압류·폐기 또는 회수

- ▶ 위해 축산물의 수입중단 또는 수입금지
- ▶ 위해 축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위해 축산물 관련 영업소의 폐쇄 등 행정조치
- ▶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공중위생상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리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당국, 해당업체 등이 실시하는 일련의 위생조치를 말한다.

II. 긴급위생조치 세부계획

1. 긴급위생조치 상황

긴급위생조치의 관계상황과 문제점

- ◆ 긴급위생조치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긴급상황"인지 "평시상황"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긴급상황"과 "평시상황"을 판별하는 것은 기상예보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다. 평소 저기압이었던 것이 언제 태풍으로 변화할 지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 ◆ 하지만 그간의 축산물 안전관리 경험을 토대로 할 때 긴급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은 대략 5~6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긴급위생조치 정의

축산물 긴급위생조치란 병원성미생물 또는 유해잔류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이 사람에게 식용 목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 예정인 경우 이로 인하여

그간 긴급 위생 상황의 사례

- ① '99년 다이옥신 사건과 같이 "해외정보 검색" 결과 수입 축산물의 위해물질 오염우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유사한 사례로는 '99년 미국산 소세지 리스테리아오염 관련 회수사건 등이 있다.
- ② '97년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O157:H7 검출 사건과 같이 수입위생검사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 유사한 사례로는 '99년 호주산 쇠고기 엔도 설판 검출 사건 등이 있다.
- ③ '95년 유방염 우유 사건과 같이 생산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로 유사한 사례로는 '99 소 내장 위생관리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건 등이 있다.
- ④ '99년 J사 베이컨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건과 같이 수거검사 활동 중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 유사한 사례로는 S사 만두제품 수거검사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건 등이 있다.
- ⑤ '96년 영국내 광우병(BSE) 사건과 같이 사

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경우등이 있다.

긴급상황의 분류

〈 국내 축산물 〉

〈 수입 축산물 〉



분류 ①

해외정보 검색 등을 통해 수출국에서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오염 또는 오염우려 상황발생
(유사사례) '99 호주 농약엔도설판 사건

분류 ③

수입된 축산물이 위해 또는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유사사례) '99 벨기에 다이옥신 사건

분류 ②

수입 축산물 검사결과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상황 발생
(유사사례) '97 미국산 대장균 O157검출사건

우리나라 (생산 단계)

분류 ④

국내 생산단계에서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오염 또는 오염우려 상황발생
(유사사례) '99 유방암 우유 사건

우리나라 (검사 단계)

분류 ⑤

국내 축산을 검사등의 결과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상황 발생
(유사사례) '99 1사 베이컨 히스테리아 검출사건

우리나라 (유동단계)

분류 ⑥

국내 축산물이 위생 감사 결과 등으로 위해 또는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발생
(유사사례) '99 5사 만두 히스테리아군 검출사건

통상 긴급상황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앞서 분류한 분류 1~60이 혼재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긴급위생조치 절차 및 내역

① 긴급상황 발생 초기 대처 요령

◆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단기간내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조치 절차가 없을 경우 평상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야 할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므로 평소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긴급재난시 대처요령과 같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해 놓아야 한다.

◆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련 긴급위생조치라 함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취하여 할 조치를 체계화한 것이다.

긴급위생조치의 절차

▶ 긴급위생조치 절차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련 긴급위생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요약된다.

(1) 상황발생 → (2) 상황파악 → (3) 기본조치 → (4) 상황판단 → (5) 긴급위생조치 및 공포 → (6) 긴급위생조치 해제 판단

긴급위생조치의 분류 및 내역

▶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긴급상황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

▶ 축산물 위생관련 긴급위생 조치는 총 33개의 조치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크게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1) 상황분석, (2) 위생조치, (3) 조직 및 협조체계, (4) 교육·홍보

<긴급위생조치 절차>

축산물 안전사고
우려 상황 발생

▶ (예)주한 ★★대사관으로부터 자국산 축산물
에서 ★★물질이 검출되었음을 통보



안전사고
기본조치 실시

▶ (예)★★국산 식고기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
될 때 까지 ★★물질이 전량 검사실시



상황판단
(긴급조치여부)

▶ 긴급위생조치 계획
실시 필요 없을 시 → 평상조치



긴급위생조치
계획시행

- (예시) 긴급위생조치
-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
- 수입점정중단조치
- 판매 및 사용중단조치
- 소비자 교육자료 배포
- 국내외 위생정보 수집
-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긴급조치해제
여부판단

▶ 긴급위생조치 계획
지속 필요 없을 시 → 조치해제및종료



긴급위생조치
여건변화

<긴급위생조치 내역>

상황 및 긴급 위생조치		조치 항목
분류① (수입)	수출국에서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오염 또는 우려 상황 발생 정보검색결과 수입 축산물 위해 물질오염정보입수	① 수입중단조치 ② 수입신고 보류조치 ③ 출고보류 조치 ④ 판매·사용금지 조치 ⑤ 자진회수 조치 ⑥ 강제회수 조치 ⑦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상대국에서도 위해물질오염확인증	⑧ 암류 및 폐기 조치 ⑨ 검역·검사강화 조치
	상대국에서 자국 축산물 위해 물질 오염(회수)공식발표	⑩ 원인조사 실시 ⑪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⑫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긴급위생조치 상황 이후	⑬ 위생조치 해제 ⑭ WTO/SPS제소 ⑮ 벌칙부과 및 행정처분
분류② (수입)	수입축산물 검사결과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상황발생 수입검사결과 위해물질 검출 가능성 확인	⑯ 상대국에 확인(조사)요청(요구) ⑰ 상대국에 재발방지방안 협의
	수입검사결과 위해물질검출 확정	⑱ 상대국에 항의서한 발송 ⑲ 상대국 작업장 승인 취소
	긴급위생조치 상황 이후	⑳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개최 요청
	수입·국내 축산물이 유통중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상황 발생	㉑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㉒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㉓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및운영 ㉔ 긴급위생조치상황반 운영 종료
분류③⑥ (수입) (국내)	수거검사결과 위해물질 검출 가능성 확인	㉕ 특별근무명령 ㉖-1 특별근무해제 ㉖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㉗ 소비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㉘ 생산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㉙ 상황점수 및 우선보고 ㉚ 정식보고 ㉛ 상황일지 작성 ㉜ 협조요청1(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거검사결과 위해물질 검출 확정	㉖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㉗ 소비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㉘ 생산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㉙ 상황점수 및 우선보고 ㉚ 정식보고 ㉛ 상황일지 작성 ㉜ 협조요청1(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긴급위생조치 상황 이후	㉝ 협조요청2(외교부, 행자부, 복지부, 환경부, 기타)
	국내 생산·검사단계에서 위해물질이 오염 또는 우려 상황 발생	㉞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국내)	국내 축산물 위해물질 오염, 오염 우려 상황발생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국내 축산물 위해물질오염 확인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긴급위생조치 상황 이후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기타	사회적으로 국내외 축산물관련 안전사고 발생 상황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해외또는 국내에서 식중독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우려 증폭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긴급위생조치 상황 이후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㉞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㉟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 → 필수사항, ⇒선택사항, ()옵션,

※ 정보검색결과에는 언론보도내용 포함

※ 상기조치는 표준제시(안)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실시되는 긴급위생조치가 표준제시(안)과 같을 필요는 없음.

<붙임1> 긴급위생조치 발령권자 및 법적 근거

조치 항 목	발령권자	법적근거
① 수입중단조치	장 관	가 21조, 23조
② 수입신고 보류조치	장 관	축 42조
③ 출고보류 조치	장 관	축 42조
④ 판매 · 사용 금지 조치	원장, 시도지사	축 36조, 42조
⑤ 자진회수 조치	원장, 시도지사	축 36조, 37조
⑥ 강제회수 조치	원장, 시도지사	축 36조, 37조
⑦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원 장	축 15조, 18조
⑧ 압류 및 폐기 조치	원장, 시도지사	축 36조
⑨ 검역 · 검사강화 조치(국내검사강화조치)	장관, 원장, 시도지사	축 42조, 15조, 행정지시
⑩ 원인조사 실시 ⑩-1 원인조사 결과확인	장 관, 원 장	가 19조, 조건
⑪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⑫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원장, 시도지사	행정지시
⑬ 위생조치 해제	장 관, 원 장	축, 가, 행정지시
⑭ WTO/SPS제소	장 관	WTO/SPS규정
⑮ 별칙 부과 및 행정처분	장관, 시도지사	축, 가 관련 규정
⑯ 상대국에 확인(조사)요청(요구)	장 관, 원 장	가 23조 조건
⑰ 상대국에 재발방지방안 협의	장 관, 원 장	가 23조, 조건
⑱ 상대국에 항의서한 발송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⑲ 상대국 작업장 승인 취소	원 장	가 23조, 조건
⑳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개최 요청	장 관	국무총리훈령 394호
㉑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장 관	축시 3조
㉒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원 장	축시 9조
㉓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및운영 ㉓-1 준비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㉔ 긴급위생조치상황반 운영 종료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㉕ 특별근무령 ㉕-1 특별근무해제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㉖ 보도자료 작성및배포 ㉖-1 준비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㉗ 소비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㉗-1 준비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㉘ 생산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㉘-1 준비	장 관, 원 장	행정지시
㉙ 상황접수 및 우선보고	원장, 시도지사	행정지시
㉚ 정식보고	원장, 시도지사	행정지시
㉛ 상황일지 작성	원장, 시도지사	행정지시
㉜ 협조요청1(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장 관, 원 장	축 42조, 행정지시
㉝ 협조요청2(외교부, 행자부, 복지부, 환경부, 기타)	장 관	축 42조, 행정지시

※ 축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시 : 동법 시행령, 축규 : 동법 시행규칙

※ 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시 : 동법 시행령, 가규 : 동법 시행규칙

※ 조건 : 수입위생조건 ※ 발령권자와 법적근거 : 규정 제 ·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집

❶ 수입중단조치

▶ 일반적인 수입중단조치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물질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과 축산업 보호를 위하여 실시한다.

♣ 다만, 위해를 일으키는 위해물질이 상대국의 업체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업체나 지역에 한정하여 수입중단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수입중단 조치는 WTO/SPS협정을 고려하여 상대국에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치계획에서 위해물질은 일반적으로 병원성 미생물, 위해잔류물질, 위해가축질병 등 공중보건상 위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❷ 수입신고 보류조치

▶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실시하는 조치로 수입 신고 보류가 되면 해당 축산물은 수입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유통과정으로 반입될 수 없다.

▶ 수입중단 조치이전에도 위해 우려가 되는 축산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로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도 있다.

❸ 출고보류 조치

▶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하거나 수입중단 조치이전에도 위해 우려가 되는 축산물로 확인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축산물

보관창고에서 위해관련 축산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국내 축산물의 경우에도 위해 여부가 확인된 축산물의 경우에는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다.

❹ 판매·사용 금지 조치

▶ 위해확인 또는 위해우려 수입 축산물이 통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축산물 가공장, 보관장, 판매장 등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내 축산물의 경우에도 위해확인 또는 위해우려 축산물에 대하여는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판매장에서 판매·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❺ 자진회수 조치, ❻ 강제회수 조치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회수에는 업체 자발적인 것(자진 회수)과 정부의 회수명령(강제 회수)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 강제회수는 위해축산물회수심의회를 소집하여 회수방법·절차 등 회수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동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실시하여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진회수는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회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회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해 축산

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제1,358호)"에 따른다.

⑦ 반송 또는 폐기 조치 (Return or disposal)

▶ 공중보건상 위험이 확인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내 축산물인 경우에는 위험 축산물에 대하여 압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한다.

⑨ 검역·검사강화 (Quarantine and enhanced inspection)

▶ 검역·검사 강화 조치는 통상적으로 다음 3 가지 경우에 실시한다.

① 상대국에서 위해잔류물질 등 위해요인이 검출(발견)된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 축산물의 위해요인에 대한 검역·검사를 강화한다.

②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중 위해요인이 검출(발견)된 경우 해당 축산물을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검역·검사를 강화한다.

③ 국내 축산물에서 위해요인이 검출(발견)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⑩ 원인조사 실시 (Conducting cause investigation)

▶ 공중보건상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위해의 조기 차단(근절),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에서 실시한다.

▶ 상대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상대국에

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지만, 필요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

⑧ 수입 축산물 위험 물질

▶ 수입 축산물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상황 및 대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조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은 초기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⑨ 위해 사고 조치 및 지원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품목 및 물량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책 수립,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지원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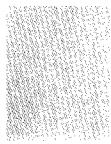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2가지로 분류된다.

① 관련 품목의 물량 : 수입(생산)물량, 보관물량, 유통물량

② 검역·검사량 (해당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 물량 중심으로)

⑩ 위생 조치

▶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사고 우려시 취한 조치는 해당 위해 요인이 제거되는 수준에 따라 위생 조치를 해제한다.



⑯ WTO/SPS제소, ⑯ 벌칙 부과 및 행정처분

▶ 위해 사고 등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⑰ 상대국에 확인(조사)요청(요구), ⑰ 상대국과 재발방지방안 협의, ⑱ 상대국에 항의서한 발송, ⑲ 상대국 작업장 승인 취소

- ▶ 위해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 위해 사고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상대국에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 ▶ 위해사고 발생 등에 따라서 상대국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상대국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작업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위해사고에 대한 초기 긴급위생조치가 완결되는 것과 동시에 상대국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개최 요청

▶ 위해사고는 통상적으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필요시 식품안전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회인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개최를 국무조정실에 요청한다.

㉑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㉒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원회 개최

▶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우려 사고 발생시 전체적인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축산물위생

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㉓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 및 운영 ㉓-1 준비, ㉔ 긴급위생조치상황반 운영 종료

▶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우려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정한 긴급위생조치상황반을 편성하고 상황 종료시 본부(반)의 운영을 종료한다.

㉕ 특별근무명령 ㉕-1 특별근무해제

▶ 긴급위생조치상황반이 편성·운영될 경우 이에 따라 특별 근무명령(근무시간, 근무자 등)을 실시하고 상황 종료에 따라 특별근무를 해제한다.

㉖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㉖-1 준비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다.

▶ 보도자료는 편집자, 취재기자의 관심과 의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하고, 광고문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㉗ 소비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㉗-1 준비 ㉘ 생산자 교육/홍보자료 작성배포 ㉘-1 준비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대응방법을 설명하여 위해 사고 확산을 방지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는 막연한 불안 및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해 사고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및 이해가 되도록 교육·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한다.

㉙ 상황접수 및 우선 보고서 작성 여부 및 일지 작성

- ▶ 긴급 상황 발생 시 정식 보고 이전에 우선 보고를 실시하여 초동 대응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보고를 기초로 하여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 또한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황일지는 대응과정에 대한 향후 검토·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㉚ 협조요청1(식약처, 농림부, 검역원, 시·도, 경찰청, 지자체)

㉛ 협조요청2(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기타)

- ▶ 효과적인 위생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청한다.

3. 긴급위생조치 상황반의 편성 및 운영

◆ 그간 경험에 따르면 긴급 위생조치는 평상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천재지변시 대처하는 재해대책본부와 같은 긴급위생조치상황반(반)의 편성은 필수적이다.

◆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정보와 조치가 집결되는 중앙집중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또한 긴급위생조치상황반의 편성은 본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어야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긴급위생조치 상황반의 구성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구성 :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
-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 : 본부 또는 조치반 구성

긴급위생조치 상황반의 운영

A. 기본 운영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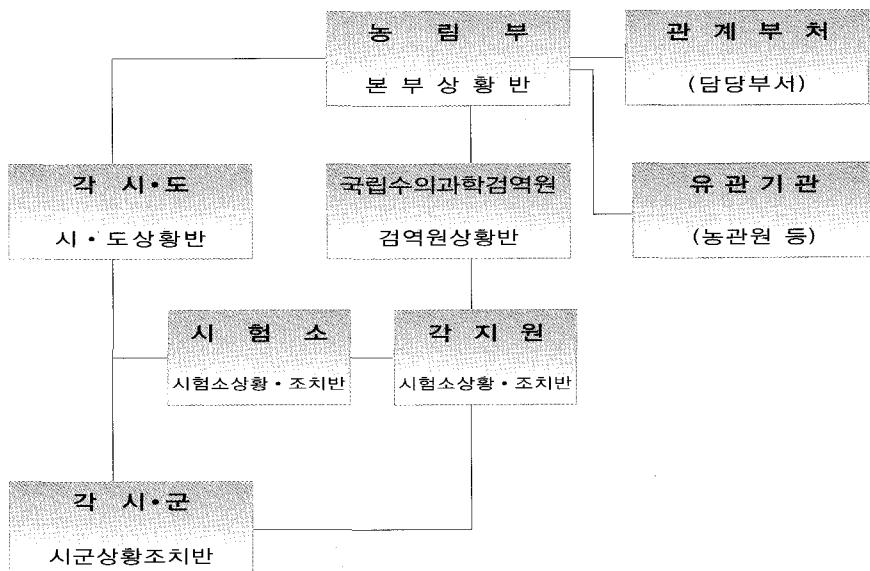
- 농림부에서 긴급위생조치의 총괄 운영 역할을 수행한다.
- 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위생조치의 실무집행을 담당한다.
- 관계부처는 긴급위생조치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본부(반)는 가능한 별도의 사무실을 정하여 운영한다.

B. 검역원 긴급위생조치 본부 운영

- 과 체제 중심으로 긴급위생조치반 편성 및 수행
- 긴급위생조치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상황반 별도 구성·운영
- 각 조치반은 상황반에 확인후 긴급위생조치 실시

C. 운영기간: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 운영한다.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구성도>



<긴급위생조치 상황반의 업무분장>

구 분	업무분장	비 고
농 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위생조치계획 총괄 지도 시·도 지도 및 부처간 업무 협조 	
관 계 부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위생조치 집행 협조 	
시 도 (시험소,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위생조치 집행 (시·도의 지사에 따라 수거 및 회수 등 집행) 	
검 역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위생조치 집행 	

상황반 - 긴급위생조치 실무지도

국내 조치반 -

- 긴급위생조치 실시
- 국내·정보수집·분석·배포
- 유관기관과의 협조요청 및 관리

수출입조치반 -

- 긴급위생조치 실시
- 해외·정보수집·분석·배포
- 유관기관과의 협조요청 및 관리

기술지원반 -

- 위해물질별 기술 지원
- 원인조사 사업 실시

행정지원반 - 긴급위생조치 관련 행정지원

※ 검역원내 각반 편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개편

<유관기관의 역할>

대한수요

구 분	역 할	비 고
외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에 대한 조치 협조(수입중단조치등) • 통상문제 대처 협조 • 해외 정보입수 협조 	
행 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안전사고 대처요령 홍보(반상회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 강화 	
복 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방역 및 원인조사 협조 •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방역및대처 협조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방역 및 원인조사 협조 •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방역및대처 협조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강제 회수 조치 협조 • 암류·폐기 조치 협조 • 원인조사 협조 • 위해물질 잔류물질 허용기준 설정 협조 • 기타 긴급위행조치 협조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통관 보류 협조 • 수입중단 조치 협조 • 출고보류 조치 협조 • 기타 긴급위생조치 협조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축산물 단속 및 조치 협조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축산물 밀수 단속 및 조치 협조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홍보처 : TV등 언론매체 홍보 협조 • 국가정보원 : 국내외 정보자료 제공 협조 	

<유관기관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 分	담당부서 및 연락처	비 고
국무조정실	<p>사회문화조정관실 T : 738-2858 복지실의관실 F : 738-2859</p>	
외 교 부	<p>지역통상국 T : 725-0788 아·태 통상과 F : 725-0789 북미통상과 T : 720-2331 구주통상과 F : 725-1737 T : 720-4748 F : 725-7353</p>	
복 지 부	<p>보건정책국 T : 503-7557 야무식품정책과 F : 504-1456</p>	
법 무 부	<p>검찰국 T : 503-7052 검찰 제2과 F : 3480-3099</p>	
환경부	<p>폐기물자원국 T : 504-9259 폐기물정책과 F : 504-9210</p>	
행 자 부	<p>자치행정국 T : 3703-4812 자치행정과 F : 3703-5540</p>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p>축산물검사부 T : 0343)467-1961~9 축산물안전과 F : 0343)467-1974 검역검사과 T : 0343)467-1972/4 F : 0343)467-1717 축산물규격과 T : 0343)467-1993/5 F : 0343)467-1989</p>	
관세청	<p>통관지원국 T : 042)472-2181 통관기획과 F : 042)481-7819 조사감시국 T : 042)472-2191 조사감시과 F : 042)481-7919</p>	
경찰청	<p>수사국 T : 313-0745 지능과 F : 312-2508</p>	
식약청	<p>식품안전국 T : 380-1726 식품안전과 F : 388-6396 식품관리과 T : 380-1633 F : 352-9445 식품유통과 T : 380-1733 F : 388-6392</p>	
해양경찰청	<p>정보수사국 T : 032)881-0112 수사과 F : 032)881-9594</p>	

<시도 축산물위생부서 연락처>

(‘00. 6월 기준)

시·도	담당과	전화	일반	팩스
서울	농수산유통과	3707-9397~8	3707-9399	
부산	농업행정과	051)888-3231/6	051)888-3209	
대구	농업행정과	053)429-2721	053)429-2719	
인천	농업행정과	032)440-2992	032)427-0700	
광주	근교농업과	062)224-4653	062)226-6484	
대전	농정과	042)250-2613	042)252-2870	
울산	농축산과	052)265-6046	052)228-2619	
경기	축산과	031)249-4508/9	031)249-2658	
강원	축산정책과	033)249-2654/2728	033)249-4042	
충북	축산과	043)220-2725	043)220-2729	
충남	축산과	042)251-2724	042)251-2729	
전북	축산과	063)280-2653	063)280-2729	
전남	축산과	062)232-4122	062)232-4120	
경북	축산과	053)950-2888	053)950-2659	
경남	축산과	055)279-2653	055)279-2659	
제주	축정과	064)740-1177	064)740-1623	

글을 끝맺으며 ···

농림부는 본 위생 SOP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위생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많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어렵게 수립된 위생 SOP가 실제 위생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본 위생 SOP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느냐일 것이다. 위생 SOP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서 위생 SOP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본 위생 SOP를 정부위생기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여 축산물 위생위험발생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검역원으로 하여금 "위생 SOP 교육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스틴-에스와 바디컨디션(BCS)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바디컨디션이란 체중의 증감이 아닌 체지방의 축적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젖소는 체지방을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는데 바디컨디션이 3.0이상이 되면 젖소에 무리없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2.5 이하가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다음 비유기에 정상적인 상태로 도달되기 어렵고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스틴-에스를 투여할 경우 체내의 체지방 분해가 많아지므로 적정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디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